

독일판례 3

사적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의 게재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쾰른고등법원 1986. 3. 27 자 판결
6U 182/85 사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1 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및 제 1004 조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잡지기사에 문자 그대로 인용된 위 법상 중요한 문제점에 관한 의사표시는, 위 의사표시를 한 본인의 의사를 문자 그대로, 또한 그 의미에 부합되게 인용하였을 것이라는, 일응의 추정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의 의도나 또는 동법자들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것이 게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가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감수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게재될 기사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이에 반하여 신문 등의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의 경우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사로 실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

사실개요

「Tentil Wschafft(섬유경제)」지의 1985년 제 26호 제 1면에서는 피신청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즉 「나는 소매상을 경영하든 또는 도매상을 경영하든지간에 상관없이 미터법을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인가된 가처분결정에 의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반 시에는 질서 벌을 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판결이유

어떠한 법률적인 관점에 의하더라도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 1조나 또는 독일 민법 제 823조 제 1장, 제 1004조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가 주장하는 금지청구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위 의사표시가 어떻게 하여 게재되게 되었는지와 위 의사표시가 과연 그 문안이나 의미에 있어서 위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신청인은, 그가 그에게 제공된 의사표시를 분명히 문자 그대로, 그 의미에 부합되게 서면, 구두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는 점을 다투고 있다. 그는 또한 위 「Textil-Wirtschaft」지가, 어떤 회의의 막간에 그와 위 잡지의 책임편집인 사이에 행해진 대화의 내용을, 위 잡지의 기사 대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Textil-Wirtschaft」지의 책임편집인 사이에 있어서의 대화는 공표를 전제로 하여 행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이 공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과 위 문제도 의사표시는 피신청인이 한 말과 그 문언 및 의미에 있어서 전혀 동일하다는 것등을 소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잡지기사에 문자 그대로 인용된 의사표시는, 위 의사표시를 한 본인의 의사를 문자 그대로거나 그 의미에 부합되게 인용하였을 것이라는 일응의 추정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밖에 어떤 회의의 막간에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위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적절하게든지 또는 부적절하게든지 간에) 후에 그 잡지에 보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잡지사의 기자에 대하여 사적으로가 아니라, 잡지사 자체에 대하여 그의 의도나 또는 동업자들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만이, 그가 의식적으로 야기한 정보가 게재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의미가 있는 공표를 예견한 사람만이, 그가 잘못된 공표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러한 공표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insoweit die Entscheidungen des Senats, GRUR 1984. 909 und 6U 168/83 von 16. 12 1983, ferner BGH, GRUR 1964. 392 ff. 「Weizenkeiml」; GRUR 1967. 362, ff.

「Spezialsalzj ; BGHZ 50. 1 ff. 「Pelzversand」 참조). 사랑들이 그 공표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심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BGH, GRUR 1974. 105f "Kollo -Schlagerp"참조) .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상의 사항에 관하여 신문기자와의 사이에 사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어떤 잡지등의 기사에서 인터뷰의 상대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